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가단1085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변론 종결 2019. 6. 21.

판결 선고 2019. 7.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810,836원 및 그 중 224,718,584원에 대하여 2018.7. 1.부터 2019. 6. 6.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희

청 구 원 인

1. 본 건 보험계약자인 피고 는 별지(나)항의 소외 피보험자와 별지(마)항의 주계약을 각 체결함에 있어, 별지(바)항의 담보로 원고발행 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별지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약정{(가)-(자)}을 체결하였음.
2.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본 건 보험계약자인 피고 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음(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8. 06.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연 15%를 적용함).
3. 피고 은 별지(사)항과 같이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가 원고에게 부담해야할 채무전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체결 시 연대보증하였음.
4. 그 후 보험계약자인 피고 가 피보험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 피보험자들은 원고발행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고, 그에 따라 원고는 별지(아)항의 보험금지급일에 지급보험합계금 224,718,584원{별지(자)항}을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음.
5.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별지(자)항의 지급보험합계금 224,718,584원 및 별지(타)항 기간에 발생한 별지(카)항의 지연손해금 90,092,252원의 합계 314,810,836원{별지(파)항}과 위 지급보험합계금 224,718,584원에 대한 별지(타)항 기간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피고들과 합의한 보증보험약정의 합의관할에 의거 귀원에 본 소를 제기함.

별지- (주) 외1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 내용

구분	보험계약자	(가) 증권번호	(나) 피보험자	(다) 보험가입금액	(라) 보험기간	(마) 주계약내용	(바) 보증내용	(사) 연대보증인	(아) 보험금 지급일	(자) 지급보험금	(차) 나머지 지급보험금	(카) 지연손해금	(타) 지연손해금 발생기간	(파) 원리금 (자)+(카)
1				37,950,000원	12.12.16.- 15.12.15.	인주대 리석상판 납품 계약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15.03.26.	3,050,000원	3,050,000원	1,212,812원	15.03.27.- 18.06.30.	4,262,812원
2				37,620,000원	14.03.01.- 17.02.28.	아파트신축 공사/주방가구 상판, 화장대상 판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14.11.21.	1,150,000원	1,150,000원	516,363원	14.11.22.- 18.06.30.	1,666,363원
3				37,620,000원	14.03.01.- 17.02.28.	아파트신축 공사/주방가구 상판, 화장대상 판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15.01.30.	300,000원	300,000원	126,072원	15.01.31.- 18.06.30.	426,072원
4				37,620,000원	14.03.01.- 17.02.28.	아파트신축 공사/주방가구 상판, 화장대상 판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15.09.11.	1,542,000원	1,542,000원	506,070원	15.09.12.- 18.06.30.	2,048,070원
5				37,620,000원	14.03.01.- 17.02.28.	아파트신축 공사/주방가구 상판, 화장대상 판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15.12.28.	1,010,000원	1,010,000원	293,867원	15.12.29.- 18.06.30.	1,303,867원
5				37,620,000원	14.03.01.- 17.02.28.	아파트신축 공사/주방가구 상판, 화장대상 판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16.07.27.	890,000원	890,000원	196,921원	16.07.28.- 18.06.30.	1,086,921원
5				37,620,000원	14.03.01.- 17.02.28.	아파트신축 공사/주방가구 상판, 화장대상 판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17.01.11.	1,100,000원	1,100,000원	182,628원	17.01.12.- 18.06.30.	1,282,628원
5				57,352,190원	12.06.20.- 14.12.30.	신축공사 주방상판 납품 들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14.07.29.	57,352,190원	57,352,190원	28,462,398원	14.07.30.- 18.06.30.	95,814,588원
5				58,919,520원	12.05.30.- 14.12.30.	신축공사 주방상판 납품 들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15.07.15.	58,919,520원	58,919,520원	20,741,284원	15.07.16.- 18.06.30.	79,660,804원
0				68,604,874원	13.04.26.- 15.12.31.	원하우스/주방 상판, 제로발리 대납품 등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15.07.15.	68,604,874원	68,604,874원	24,150,793원	15.07.16.- 18.06.30.	92,755,667원

11			33,880,000원	13.12.18. - 14.05.06.	주 법정판 납품선 지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금지급 부종		14.12.01.	30,800,000원	30,800,000원	13,703,044원	14.12.02. - 18.06.30.	44,503,044원
합 계			224,718,584원	224,718,584원	90,092,252원			314,810,836원					

